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2. 12.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2-116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15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금)

2. 제출사유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안 제3조의2)
- 나.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공개규정의 보완(안 제5조)
-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0조)
-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4조 등)

4. 관계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고 기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의 “법” 제16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는 등 각 호를 알맞게 정비하고 있고(안 제3조의2),
 - 같은 법 제92조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현행 조례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증감 현황 등의 공개방법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안 제 5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 또한, 조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였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조문을 추가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으로 보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로 판단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그리고 제5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데 따르는 것임.(다만, 제출된 개정안의 기준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준과 동일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삭제·추가하고 있어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조례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제16조(공유재산심의회)</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p><신 설></p> <p><신 설></p>	<p>제16조(공유재산심의회)</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u>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 2. <u>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u> 3. <u>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u>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u>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u>

□ 조례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u> 재산</p> <p>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u> 토지</p>

□ 조례 제14조 외 사용·수익허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u>사용·수익허가</u>”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7. “<u>사용허가</u>”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p>

□ 조례 제70조, 제91조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81호, 2019. 8. 20., 일부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p>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p>